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10. 18.(월) / 총 4매(본문4)	
<b>담당 부서</b>	공공주택 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과장 이기봉, 사무관 양승진, 김민균, 주무관 고서린 •☎ (044) 201-4580, 4513, 4536
	청년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과장 정송이, 사무관 한시겸 •☎ (044) 201-3638
보 도 일 시		2021년 10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 · 청년 등 이주 지원

### - 19일부터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입법예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,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10.19.(화)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,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

-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(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)이 변동될 경우 일부\*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,

\* 대학생→청년·신혼부부(한부모가족), 청년→신혼부부(한부모가족)

-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\*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.

\* 신혼부부→청년, 수급자⇔청년·신혼부부, 신혼부부·수급자→고령자 등

- 아울러,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,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\*을 새로 적용한다.

\* 대학생·청년 6년, 신혼부부(자녀 有) 10년, 고령자·수급자 20년 등

## ②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

-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, 불가피한 경우\*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,

\* 세대원수 증감, 병역의무 이행, 대학소재지·소득근거지 변경 등

-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.
- 다만,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.

## ③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

-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\*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,

\* 입주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

- 출산, 노부모 부양,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.

#### 4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

-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·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·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,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,
-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·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5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

-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\*의 동의를 받아 소득·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,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,

\* 신청자 및 배우자,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

- 수급자 결정 시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,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”한다면서,

- “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(40일간)이고, 관계 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.

○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의 '정책자료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'에서 볼 수 있으며, 국민참여입법센터,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※ 제 출 처 : ☎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 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(☎ 044-201-4580, 4536, fax 044-201-5663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양승진 사무관(법령 총괄, ☎ 044-201-4580), 김민균 사무관(행복주택, ☎ 044-201-45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